동체육회 규정

2022. 02. 10. 전부개정 2021. 12. 06. 제정

제1장 총 칙

- 제1조(근거 및 명칭)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정관 제6조, 제3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단체로 가입된 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 - ② 동체육회는 해당 동명을 포함하여 '광진구〇〇〇동체육회'로 하며, 영문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2조(목적) 동체육회는 광진구의 체육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복지향상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소재지) 동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동 소재지에 둔다.
- 제4조(사업) 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 - 1. 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

- 2. 해당 동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내 외 교류
- 3.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승인한 사업의 주최 · 주관
- 4. 동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- 5. 그 밖에 해당 동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- 제5조(조직) ① 동체육회의 구성원은 해당 동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② 동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종목단체 및 클럽단체로 구성 할 수 있다.
 - ③ 동체육회는 필요 시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.
- **제6조(권리와 의무)** ① 동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- ② 동체육회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가입 및 탈퇴 등) ① 체육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동체육회는 체육회의 가입·탈퇴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동체육회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단체의 제명 및 징계)

- ① 회원단체가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, 동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회원단체의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- ④ 동체육회에서 발생하는 징계 관련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
제3장 총 회

- **제9조(총회의 구성)** ① 동체육회의 총회는 가입된 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 원을 구성한다.
 -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동체육회에 서면(전자메일을 포함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

제10조(총회의 기능) 동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동체육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
- 3. 임원의 선임(사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)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중요 사항
- 제11조(의장) ① 총회의 의장은 동체육회의 장(이하 "회장" 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
 - 제12조(총회의 소집) 동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13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4장 이사회

제1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본회의 이사회는 월례회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5장 임원

제15조(임원) ① 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7명 이하(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,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권고)
- 3. 이사3인이상 10인이내(회장,부회장)
- 4. 감사 1인
- ② 동체육회의 임원은 동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- 제16조(회장의 선출) 동체육회의 회장은 자치동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는다.
- 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(수석 부회장) 또는 부회장 중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- **제18조(임원의 임기)**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 -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 - ③ 회장이 중도 사직할 경우 남은 잔여기간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하고 이를 광진구체육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제19조(임원의 선임) ① 부회장(사무장제외)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회장은 해당 동 주민센터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,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- 제20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동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동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- 2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충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

제21조(임원의 결격사유)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.

제22조[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]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
제23조[임원의 보수]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회원단체

제24조(회원단체의 조직 및 구성) 동체육회 회원단체는 지역 내체육동호인, 종목단체 및 클럽 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.

- 제25조(회원단체 임원의 인준 등) ① 동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장은 동체육 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 - ② 동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.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26조[재산의 구분] ① 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

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-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부 동 산
- 3. 기 금
- 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- 5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. 다만,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.

제27조(재원) 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회원단체의 회비
- 2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3. 기부금 및 찬조금
- 4. 사업수익금
- 5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
- 6. 공공단체의 지원금 · 보조금
- 7. 기타수입금

제28조[회계연도] 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9조[예산편성 및 결산] ① 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

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② 동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(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회계감사 등) ① 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
② 동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
제8장 사무국

제31조(사무국) 동체육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장과 동체육회 담당 주무관을 포함하여 구성하길 권장한다.

제9장 보 칙

제33조[규정의 해석 등] ① 구체육회 정관 제54조에 따라 동체육회 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 동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, 반드시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(2021. 12. 06.)

제1조[시행일]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

한다.

부 칙(2022. 02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